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마곡동) 원그로브 A동 3층 회의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9호선 마곡나루역)
※ 문의) 대표전화 : 02)2011-7114,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dlenc.co.kr>

3.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안) : 보통주 890원(17.8%), 우선주 940원(18.8%), 2우선주(전환) 890원(17.8%)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첨부 참조)
 - 제2-1호 :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대리행사 방법 변경의 건
 - 제2-2호 :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 제2-3호 : 집중투표 배제조항 삭제의 건
 - 제2-4호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및 의결권 제한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흥희 선임의 건 (첨부 참조)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찬 선임의 건 (첨부 참조)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당기 이사 보수한도 : 30억원 (전기 이사 보수한도 30억원 / 실지급 총액 17억원)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주주님께서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년 3월 15일 ~ 2026년 3월 24일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첫째날은 오전 9시부터 가능,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2026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마곡동)
D L 이 앤 씨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박 상 신 (직인생략)

< 첨부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변경 전후 비교표

• 제2-1호 :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대리행사 방법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부칙 (신설)</p>	<p>제26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u>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u></p> <p>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를</u> 제출하여야 한다.</p> <p>부칙 <u>②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및 대리권 증명 관련 근거 규정 마련 ※ 상법 시행시기를 고려한 부칙 신설</p>

• 제2-2호 :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36조(이사의 수)</p> <p>① 이 회사의 총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u>사외이사</u>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p>②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38조(<u>사외이사</u> 후보의 추천)</p> <p>① 인사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u>사외이사</u> 후보를 추천한다.</p> <p>② <u>사외이사</u>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u>사외이사</u>이어야 하고, <u>사외이사</u>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사외이사</u>이어야 한다.</p> <p>⑨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부칙 (신설)</p>	<p>제36조(이사의 수)</p> <p>① 이 회사의 총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u>독립이사</u>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p>② <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독립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38조(<u>독립이사</u> 후보의 추천)</p> <p>① 인사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u>독립이사</u> 후보를 추천한다.</p> <p>② <u>독립이사</u>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u>독립이사</u>이어야 하고, <u>독립이사</u>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독립이사</u>이어야 한다.</p> <p>⑨ <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부칙</p> <p>③ (<u>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u>) 제36조, 제38조 및 제51조 제3항, 제8항,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p> <p>※ 상법 시행시기를 고려한 부칙 신설</p>

• 제2-3호 : 집중투표 배제조항 삭제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37조(이사의 선임) <u>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부칙 (신설)</p>	<p>제37조(이사의 선임) <u>③ (삭제)</u></p> <p>부칙 <u>④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u></p>	<p>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배제 조문 삭제 ※ 상법 시행시기를 고려한 부칙 신설</p>

• 제2-4호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및 의결권 제한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u>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p> <p><u>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부칙 (신설)</p>	<p>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u>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p> <p><u>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부칙 <u>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u> <u>⑤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u></p>	<p>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변경,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의결권 제한 변경 ※ 상법 시행시기를 고려한 부칙 신설</p>

< 첨부 >

<제3호 / 제4호 의안> 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관계·사외이사후보자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흥희	1959.07.17	사외이사	분리선출	-	인사위원회
이찬	1973.06.02	사외이사	분리선출	-	인사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흥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11~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2010	서울지방국세청장	
		2009~2010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2009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2008~200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2007~2008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2005~2007	주미뉴욕총영사관파견국장(세무관)	
		2004~2005	국세청 혁신기획관	
		2003~2004	국세청 법인세과장	
이찬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2026~	서울대학교 첨단융합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2024~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교수	
		2006~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2022~2023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2019~2022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센터장	
		2015~2018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원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경영진 여부·법령상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흥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